

# 2018 수원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

## I 감사실시 개요

### ① 감사배경 및 목적

- 최근 증가하는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 등 집행실태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위법·부당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
-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위한 예방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는 물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### ②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수원문화재단
- 감사범위 : 2016. 1. 1. ~ 감사일 현재까지

### ③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2018. 7. 17. ~ 7. 20.[4일간]
- 감사인원 : 감사팀장 등 5명

### ④ 감사 중점사항

- 보조사업 및 대행사업, 수탁사업 등 추진 및 정산 분야
- 예산편성의 적정성
- 회계처리 및 결산분야
- 각 사업별 협약사항 이행 여부
- 업무태만 및 소극적 행정 등
- 기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
## II 감사결과

### 1 총평

- 대행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등 수입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회계규정 준수여부, 정산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,
- 수원문화재단에서는 지난 3년간 수입금 〇〇,〇〇〇,〇〇〇천원에 대해서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개별 통장으로 받아 직접 지출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고 있어 향후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
- 그리고 지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체크카드 사용으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 회계관직의 승인 없이 자금 입·출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예산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으며,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도 계약절차 및 계약방법, 대가지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회계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만큼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
- 향후 수원문화재단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해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
- 한편 수원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각 부서에서는 대행기관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부조건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

### 2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)

총계	행정상 조치		기타
	시정	주의	
○	○	○	

### ③ 주요 지적사항

제목	<p><b>수입금에 대한 예산 미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절차 미준수 (no. 1)</b></p>
처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산편성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,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</li> <li>·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</li> </ul>
위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행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등 2016년 이후 ○○개 사업 금 ○○,○○○,○○○천원에 대하여 예산에 사업수익으로 편입하지 않고 직접 지출</li> <li>· 지급명령 없이 통장에서 예산이 인출되도록 하는 등 회계규정 위반하였으며 ○5○개 사업 ○○건에서 실제로 잘못 결재됨과 동시에 현금이 인출되는 등 통장관리 소홀</li> </ul>
처분 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고 회계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</li> </ul>
제목	<p><b>○○○○○○○○ 육성사업 관련 선금지급 및 정산 소홀 (no. 2)</b></p>
처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 지급 시 직접노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</li> <li>· 또한 선금 지급 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·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증권·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</li> <li>· 「○○○ ○○○ 육성사업 운영세칙」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규정</li> </ul>
위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금지급 시 신청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직접노무비 ○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예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지급된 선금도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정산 완료</li> <li>· 최초 계약 이후 ○번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채권확보조치를 소홀</li> <li>· 1년 이내 퇴직자 ○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반납하지 않고 정산 완료</li> </ul>
처분 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금 지급 시 신청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급하고 보증·보험기간 변경 시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증권·보증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주의 조치</li> <li>· ○차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미 정산금액 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관리기관인 ■■■■■■■■■공단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도록 시정 조치</li> </ul>

제목	<p><b>▲▲▲▲ ▲▲ 프로그램 개발 계약 체결 및 집행 부적정 (no. 3)</b></p>
처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여야 하며,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</li> <li>·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</li> <li>· 「소득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소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</li> <li>·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, 물품의 제조·구매 및 용역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</li> </ul>
위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‘<b>■■■■■ ■■■■■■ ■■■전시</b>’ 등 ○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(□□□)과 협약을 체결한 후 이행완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□□□이 사업자로 등록된 □□□□□□□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였음에도 시정조치 하지 않았으며</li> <li>· 전문성·기술성·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의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개인에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계약법 검토 소홀</li> <li>· ‘<b>▲▲▲ ▲▲▲ ▲▲▲▲ 프로그램</b>’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의성을 위해 ○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이 아닌 기존 업체와 협약의 형태로 1인 수의계약 체결</li> </ul>
처분 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향후 문화행사 추진 시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 및 협약 체결,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<b>주의 조치</b></li> </ul>
제목	<p><b>자본적 대행사업 물품 미 등재 운영 부적정 (no. 4)</b></p>
처리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물품관리관, 물품운영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·유지 하여야 함</li> <li>· 「수원문화재단 물품관리규정」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함</li> </ul>
위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○○년 ~ 20○○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○개사업, 총 ○○, 금액 ○○○,○○○,○○○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, 표준서식에 등재하지 않고 물품을 운영함으로써 재물조사, 물품의 정비 및 수선, 손상실 보고 및 처리, 물품매입 및 불용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</li> </ul>
처분 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물품 구매 후 미 등재 운영하고 있는 ○개사업, 총 ○○종의 물품을 재단 표준서식으로 등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<b>시정 조치</b></li> </ul>